3.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65조).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1) 보상의무의 발생요건

①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638조의 2).

② 재산상 손해의 발생

㉮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보험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가지고 있던 피보험이익에 대해 보험사고로 야기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제667조).

1) 보상의무의 발생요건

③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화재로 인하여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2다64520).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손해의 산정과 보상

① 손해액산정의 원칙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제676조). 손해보상의 방법은 금전지급이 가장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현물급여 또는 수선 등의 방법이 약정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 예외

당사자 간에 신가보험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즉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 발생 시에 중고품이더라도 신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때에는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 손해액의 산정

보험자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사정을 해야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에 대한 각종 조사를 하고, 손해액에 대한 사정은 손해사정인 또는 감정인이 담당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제676조 2항).

2) 손해의 산정과 보상

② 손해보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한다.

㉮ 전부보험

보험가액의 전부를 부보하는 전부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하면 약정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되,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분손)된 경우에는 발생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면 된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보한 일부보험에서는 전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의 전액이 지급되지만, 분손의 경우에는 손해액에 부보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초과중복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한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전손의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지급한다(제669조).

㉱ 손해방지 · 경감비용

손해방지 · 경감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80조 1항).

3)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제659조).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 경감의무

1) 개념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제680조 1항).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을 보험계약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자도 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다른 관계자가 대신 이행한 때에는 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①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자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손해방지 및 경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자가 상당인과관계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간접의무는 아니며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적 의무이다.

3) 시기

① 손해방지 · 경감의무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②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 의무의 이행은 불가능하므로 본 의무는 사고발생사실을 안 때로부터 부담한다.

4) 범위

①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의 비용상환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전손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분손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 경감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손해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해 면책이 된다고 해도 이미 소요된 비용도 손해방지 · 경감비용으로 해석되어 보험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손해방지 · 경감의무는 화재발생 시 소화 등 화재진압행위나 구조활동, 가재도구를 끌어내기 등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증거나 증인의 확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하는 행위 등 간접적인 것일 수도 있다.

5) 의무이행의 정도

① 손해방지행위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종류 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손해방지행위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종류 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 손해의 확대방지 또는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본의무의 내용이 아니다.

④ 의무의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단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아야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노력했을 정도의 작위 또는 부작위 수준이면 족하다.

⑤ 노력을 하여 반드시 손해방지 및 경감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시킬 수도 있다.

⑥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방지 또는 경감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의무위반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본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 · 경감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계에 의해 지급할 손해보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손해방지 · 경감의무 위반사실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제680조 1항).

④ 면책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손해방지비용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판례와 다수설은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정한 약관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

7)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다만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상환의 한도를 보험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4.보험자대위

(1) 개념과 근거

1) 의의

①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잔존물대위라 하고(제681조), 제3자에 대한 권리(청구권)를 취득하는 것을 청구권대위라 한다(제682조).

③ 잔존물대위는 그 성질상 인보험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권대위는 인보험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제729조). 다만 인보험 중에서 상해보험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729조).

2) 근거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지거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계약적 성질과 상충된다.

② 손해보험의 성질상 피보험자가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대위 제도가 필요하다.

(1) 개념과 근거

3) 법적 성질

① 보험자대위는 대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양도행위가 아니면 권리의 이전에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필요없다.

② 손해를 야기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으며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인도 등 물권변동의 절차(잔존물대위)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청구권대위).

(2) 잔존물대위

1) 개념

① 잔존물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제681조).

②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후 남은 엔진이나 타이어, 화재보험에서 타지 않은 석재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이다.

2) 보험위부와의 비교

	잔존물대위	보험위부
의의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전부 보상해준 후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 후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전부를 청구하는 제도
대상	손해보험에서 인정	해상보험에서만 인정
인정목적	이중이득의 금지	손해산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
요건	법률상 당연이전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함
범위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	위부 목적물의 가액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크다고 해도 보험자는 위부 목적물의 전부를 취득

3) 잔존물대위의 요건

①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하게 되므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②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이란 실손해에 대한 금액 이외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제680조), 또는 손해액 산정비용(제676조) 등이 포함된 액수이다.

㉯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는 잔존물대위가 불가능하며, 지급액에 비례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4) 효과

① 법률상 당연이전

잔존물대위로 인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는 권리가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② 이전시기

㉮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보험자는 잔존물 처분 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잔존물을 처분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